

[서식 예] 답변서(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 시효중단의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00가단000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다투지 아 니합니다.
- 2. 취득시효의 중단
 - 가.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기 전인 2○○○. ○.
 ○.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단○○○○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입니다.
 - 나.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 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 환청구소송도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211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는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의 1 소장 부본

1. 2 나의 사건검색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00. 0. 0.

위 피고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면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